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(법률 제21235호, '25.12.23. 공포, '26.12.2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를 규정하고,

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

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(안 제18조의5)

나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(안 제35조제1항)

- 다. 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‘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’ 수준으로 완화(안 제39조제4항)
- 라.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(안 별표2)
- 마.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별표4의3)
- 바. 부담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(안 별표5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5(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
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

1.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
2.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생산·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
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5조제1항 전단 중 “3월 10일”을 “3월 31일”로 한다.

제39조제4항 중 “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(추가징수
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)”를 “제32
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365회”를 “300회”로 한다.

별표 4의3 제1호 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토.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요
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

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2. 중 “(총부당금액/요양급여비용 총액 +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)”을 “{총부당금액 / (요양급여비용 총액 +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)}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8조의5(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 1.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.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생산·관리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5조(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)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<u>3월 10일</u>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(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	제35조(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) ① ----- ----- ----- <u>3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[illegible]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

제32조 제

2호가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

의 하한
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[별표 2]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

현 행	개 정 안
5의2. 제1호, 제3호(너목은 제외한다)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5의2. ----- ----- ---- 300회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나. (생 략)	가.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	다. (생 략)
4) 그 밖에 1)부터 3)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	4) ----- ----- ---- 300회----- -----

[별표 4의3] 제공 요청 자료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1. 법 제9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. <u>토.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요양급여 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</u>

[별표 5]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

현 행	개 정 안
[비고] 2. 부당비율은 <u>(총부당금액/요양급여비용 총액 +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) × 100</u> 으로 산출한다.	[비고] 2 부당비율은 <u>{총부당금액/(요양급여비용 총액 +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)} × 100</u> 으로 산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08